제213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월성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거 창 군

【체육청소년사업소】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안 번호	2015 ~

제출일자 : 2015. 9.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요구이유

월성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17조,「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위탁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 위 치 :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
❍ 개 원 일 : 2001. 5. 20
❍ 사 업 비 : 4,964백만원(국비 1,680, 도비 860, 군비 2,424)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시설규모 :
- 부 지 : 96,912㎡(29,315평, 대지 46,426㎡, 임야50,486㎡)
- 건 평 : 건축면적 1,544.04㎡, 연면적 3,945.03㎡(지하1층, 지상3층)

구분	면적(㎡)	주 요 시 설	비고
계	3,420.85	지하 1층, 지상3층	본관
지하	871.86	식당,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1층	1,143.54	사무실, 강의실(2곳), 숙소(10실), 준비실, 원장실	
2층	1218.7	강당, 강의실, 숙소(8실)	
3층	186.75	지도자숙소(5실)	

나. 그간 운영사항 등

○ 2000. 12. 28 ~ 2003. 12. 27 : 민간 위탁

○ 2003. 12. 28 ~ 2006. 12. 31 : 1차 계약 갱신

○ 2007. 1. 1 ~ 2009. 12. 31 : 2차 계약 갱신

○ 2010. 1. 1 ~ 2012. 12. 31 : 3차 계약 갱신

○ 2013. 1. 1 ~ 2015. 12. 31 : 4차 계약 갱신

다.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근무인원(상시)	이용인원 (2014년기준)	수입 및 지출현황(천원)		
		수입(A)	지출(B)	증감(A-B)
계 : 4명 - 원 장 :1명 - 사무국장 :1명 - 팀 장 :1명 - 영 양 사 :1명	계 : 8,879명 - 초등학교 : 878명 - 중고등학교 : 7,380명 - 대학교 : 0명 - 일반 : 621명	357,866 (수련 및 프로그램 지원비, 기타수입)	357,866 -인건비: 95,837 -시설보수: 19,568 -공공운영비: 50,147 -차입금상환: 64,394 - 운영비: 127,920	0

라. 위탁사무 및 조건

○ 월성청소년수련원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월성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마. 위탁기간 : 2016. 1. 1 ~ 2019. 12. 31일까지 4년간

○ 위탁기간 만료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바. 수탁자격 : 청소년육성(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 선정방법 : (사)홍사단의 위탁계약갱신 신청서 접수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아. 예산지원

○ 월성청소년수련원 시설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결정한 사항 지원

3. 참고사항

가. 향후계획

○ 군의회 동의 및 위탁기간(규칙)변경 : 10월

○ 수탁기관 신청서접수 : 10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6~9명) :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선정 : 12월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 12월 하순

나. 위탁계약갱신 계획 : 따로 붙임

다.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계약갱신 계획

2015. 12. 31일자 월성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 계획입니다.

□ 위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운영) 및 제6조(위탁운영)

□ 시설 및 운영현황

○ 시 설 명 :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 위　　치 :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
○ 개 원 일 : 2001. 5. 20
○ 운영유형 : 민간위탁운영
○ 시설유형 : 청소년수련시설
○ 근무인원(상시) : 4명(원장1, 사무국장1, 팀장1, 영양사 1)
○ 사 업 비 : 4,964백만원(국비 1,680, 도비 860, 군비 2,424)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시설규모 :
- 부　　지 : 96,912㎡(29,315평, 대지 46,426㎡, 임야50,486㎡)
- 건　　평 : 건축면적 1,544.04㎡, 연면적 3,945.03㎡(지하1층, 지상3층)

구분	면적(㎡)	주 요 시 설	비고
계	3,420.85	지하 1층, 지상3층	본관
지하	871.86	식당,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1층	1,143.54	사무실, 강의실(2곳), 숙소(10실), 준비실, 원장실	
2층	1218.7	강당, 강의실, 숙소(8실)	
3층	186.75	지도자숙소(5실)	

□ 최초위탁

○ 수탁운영 관리자 : (사)홍사단 이사장(이사장 구치모)
○ 위·수탁기간 : 2000. 12. 28 ~ 2003. 12. 27(3년간)
○ 위탁조건
- 위탁대상 시설의 시설 및 장비의 무상사용
-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원칙
- 위탁대상 시설의 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심사 결정한 사항 지원
- 특성화사업 등 시설공사 마무리를 수탁단체와 협의하여 추진

□ 1차 계약갱신

○ 수탁운영 관리자 : (사)홍사단 이사장(이사장 구치모)
○ 위·수탁기간 : 2003. 12. 28 ~ 2006. 12. 31(3년 4일)
○ 위탁조건
- 위탁대상 시설의 시설 및 장비의 무상사용
-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원칙
- 위탁대상 시설의 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심사 결정한 사항 지원
- 관련법규 준수 의무

(※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12월 31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함)

□ 2차 계약갱신

○ 수탁운영 관리자 : (사)홍사단 이사장(이사장 반재철)
○ 위·수탁기간 : 2007. 1. 1 ~ 2009. 12. 31(3년간)
○ 위탁조건 : 1차 갱신계약과 같음

□ 3차 계약갱신

○ 수탁운영 관리자 : (사)홍사단 이사장(이사장 반재철)
○ 위·수탁기간 : 2009. 1. 1~ 2012. 12. 31(3년간)
○ 위탁조건 : 2차 갱신계약과 같음

□ 4차 계약갱신

○ 수탁운영 관리자 : (사)홍사단 이사장(이사장 반재철)
○ 위·수탁기간 : 2013. 1. 1 ~ 2015. 12. 31(3년)
○ 위탁조건
- 위탁대상 시설의 시설 및 장비의 무상사용
-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원칙
- 위탁대상 시설의 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심사 결정한 사항 지원
- 관련법규 준수 의무

□ 이용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초등	중고등	대학교	일반	계
2001년	2,698	3,555	505	2,449	9,207
2002년	5,381	13,812	3,885	3,225	26,303
2003년	9,803	6,951	3,455	2,973	23,182
2004년	7,994	18,176	885	2,538	29,593
2005년	7,152	20,533	1,859	2,139	31,683
2006년	6,815	19,391	1,841	4,242	32,289
2007년	10,320	16,464	1,250	3,604	31,638
2008년	8,616	16,557	520	5,797	31,490
2009년	3,250	11,881	280	4,207	19,618
2010년	3,746	13,004	748	2,886	20,384
2011년	3,952	13,641	1,663	3,191	22,447
2012년	2,966	13,290	763	2,299	19,318
2013년	5,576	10,229	0	2,431	18,236
2014년	878	7,380	0	621	8,879
2015년 8월까지	2,088	6,705	0	776	9,569
계	72,693	167,255	17,654	39,550	297,152

□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3	1.24~25	눈꽃캠프 인증수련활동
	1.24~27	거창군월성눈꽃캠프
	2.28	거창군드림스타트“직업체험활동”
	3.9~10	천체 메시에 마라톤 개최
	3.9~10	고로쇠축제 주관
	7.5	여성주간 거창한마당 축제
	7.27~28	거창군드림스타트“비나리가족캠프”
	7.10~13	진로캠프“행복한 꿈 찾기”
	8.1~2	거창군 보건소“건강증진캠프”
	8.2~3	심인고등학교 과학캠프
	8.5~7	혜성여자중학교 하계영어캠프
	9.4~5	청소년활동 유관기관 워크샵
	10.25~27	거창군평생학습축제
	11.02~03	전국청소년천체관측대회
	11~12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 학습
	12.5	미혼남녀 좋은 인연만들기

2014	1.16~1.25	거창군월성눈꽃캠프
	3 ~ 5	학생 단체 수련 활동
	5 ~ 9	수련원 외부 리모델링
	10.25~10.26	전국 청소년 천체 관측 대회
	11.22	거창소방서 “119 소방안전활동”

2015	1.16~1.25	거창군월성눈꽃캠프
	3 ~ 6	학생 단체 수련 활동
	8.13~8.14	여름 천문 우주 캠프
	10월 중	인증 수련 활동 (예정) “위기탈출 넘버원” “별, 우주 그리고 나”
	11.7~11.8	전국 청소년 천체 관측 대회 (예정)

□ 기본 월별 일정

<table>
<tr><td>구분</td><td>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d>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d>1월</td><td>2월</td></tr>
<tr><td rowspan="2">학교 단위 수련 (학단)</td><td colspan="6">중·고등학교 정기수련</td><td colspan="2">중·고등학교 정기수련</td><td colspan="2">중·고등학교 졸업수련</td><td></td><td></td></tr>
<tr><td></td><td></td><td colspan="4">초등학교 정기수련</td><td></td><td colspan="2">초등학교 정기수련</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테마 수련 및 캠프 (Camp)</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천체 관측 대회</td><td></td><td colspan="2">눈꽃 축제</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교회하계 캠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주말체험 프로그램</td><td colspan="12">수시로 시행예정(월 1회)</td></tr>
<tr><td>공모사업</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4">인증프로그램실시</td><td colspan="2">겨울 방학캠프</td></tr>
</table>

□ 2012~2013 인원 참가 현황(누적 현황)

청소년이용률(연간청소년이용자수÷연간전체이용자수×100) : 86.7 %

구분 이용자수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청소년	기타	청소년	기타	청소년	기타	청소년	기타	청소년	기타	청소년	기타	청소년	기타	청소년	기타	청소년	기타	청소년	기타	청소년	기타	청소년	기타	청소년	기타
2012	19,930	16,686	3,244	386	180	54	560	2,425	122	2,936	543	4,834	239	906	133	1,517	482	1,290	490	372	118	1,536	189	178	126	252	56
2013	18,236	15,805	2,431	570	60	0	0	1,198	92	1,672	65	4,259	207	1,423	173	1,905	385	1,213	281	162	450	2,767	280	398	392	238	46

□ 2014 인원 참가 현황(누적 현황)

연번	학교명 및 단체명	초등	중등	고등	성인	합계
1	동주여자중학교		780		9	789
2	명곡여자중학교		690		18	708
3	대암고등학교			945	27	972
4	토월중학교		840		21	861
5	거창 YMCA			60	6	66
6	개금여자중학교		450		18	468
7	삼현여자중학교		1,140		36	1,176
8	광진청소년수련관		105		30	135
9	세계인재개발원			158	16	174
10	무주초등학교	315			18	333
11	대전천체동아리		16	60	40	116
12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294		18	312
13	울산지구과학교과연구회				40	40
14	아마추어천문학회				60	60
15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120		20	140
16	신월중학교		222		15	237
17	한국스카우트부산연맹	600			24	624
18	합천드림스타트	35			4	39
19	사천특수교육지원센터	120	100		74	294
20	봉곡중학교		537		36	573
21	세계인재개발원			108	15	123
22	대성중학교		252		10	262
23	거창소방서	39			6	45
24	세계인재개발원			80	16	96
합 계		1,109	5,546	1,411	577	

□ 2015 상반기 인원 참가 현황(누적 현황)

연번	학교명 및 단체명	초등	중등	고등	성인	합계
1	눈꽃 캠프 1차	92			12	104
2	눈꽃 캠프 2차	98			10	108
3	눈꽃 캠프 3차	58	48		12	118
4	눈꽃 캠프 4차	80			2	82
5	거창공업고등학교			123	12	135
6	부산동중학교		192		18	210
7	동명중학교		882		39	921
8	개금여자중학교		474		15	489
9	토월중학교		657		24	681
10	삼계중학교		789		27	816
11	도계중학교		834		27	861
12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189		9	198
13	남일중학교		744		27	771
14	도계초등학교	366			16	382
15	성포중학교		369		27	396
16	영운고등학교			834	27	861
17						0
18						0
19						0
20						0
21						0
22						0
23						0
24						0
합 계		694	5,178	957	304	

□ 현 수탁자 운영사항

○ 수련원 운영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위·수탁계약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히 수행하여 왔음

○ 지역발전을 위해 거창홍사단을 설립하고 연고를 확보함

○ 2014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에서 "최우수"의 성적 (도내 4곳에 불과)

□ 재계약 만료에 따른 검토사항

○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 ③항

⇒ 군수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계약갱신할 수 있음

변경안 ⇒ "군수는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계약갱신할 수 있음"으로 변경

※ 2015년부터 2년마다 평가

□ 재계약 만료에 따른 운영 방안

구 분	장 점	단 점
계약 갱신	○ 검증된 단체 - 오랜기간 위탁운영으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의 성적 ○ 캠핑장, 과학관, 수련원 업무의 연속성 유지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	○ 거창홍사단의 수련원, 과학관, 캠핑장 위탁관리로 타 단체의 시기심 유발
공개 모집	○ 신규단체의 선정 기회 부여	○ 업무의 비연속성 ○ 검증되지 않은 단체 운영시 문제발생 소지

□ 운영방안에 따른 추진절차

○ 계약갱신의 경우

- 군의회 동의 : 2015. 10월
- **위탁기간(규칙) 변경 : 2015. 10월중**
- 재위탁 신청서 접수 : 2015. 10월
  (신청서, 청소년단체신고필증,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종사자배치계획, 장비보유현황 등)
- 민간위탁심의회 심의 : 2015. 11월
  ⇒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갱신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 2015. 12월

○ 공개모집의 경우

- 군의회 동의 : 2015. 10월
- **위탁기간(규칙) 변경 : 2015. 10월중**
- 공개모집 공고 : 2015. 10월(15일간)
- 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15. 11월
- 수탁자 선정 발표 : 2015. 12월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 2015. 12월

□ 부서의견

○ 현 수탁자는 오랜 운영경험으로 전문성이 확보되었고,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의 성적을 거둠.

○ 또한, 월성우주창의과학관 및 국민여가캠핑장의 연계관리로 효율적인 운영도모를 위해 **계약갱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추진계획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4년

○ 수탁자격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위탁사무 및 조건

- 월성청소년수련원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월성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 위탁대상 시설의 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심사 결정한 사항 지원
- 관련법규 준수 의무
- 위탁기간 : 2016. 1. 1 ~ 2019. 12. 31일까지 4년간
- 위탁기간 만료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 수탁기관 신청 : 계약갱신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

- 위원구성 : 6 ~ 9명
- 위원선정 : 관련공무원, 군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협약체결 : 수탁자와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향후 추진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위탁운영 접수(계약갱신)/모집공고(공개모집)	2015. 10월~11월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2015. 11월~12월	
협약체결/ 공증	2015. 12월	
수탁자 운영	2016. 1월	

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근거법령 및 조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운영)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 할 수 있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59조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7.,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4.1.7., 2015.1.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수탁 관리운영 재산목록

2015. 9.

위탁 관리운영 재산목록

□ 토지 및 건물 목록

◦ **토지** :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608번지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 적(㎡)	비 고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608번지	대지	46,426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215-2번지	임야	50,486	
계		96,921	

◦ **건물** :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지하1층, 건물연면적 3,945.03㎡

세 부 시 설 명		면적(㎡)	세 부 시 설 명			면적(㎡)
지하 1층	전기실	88.94	2층	본 관 동	분임토의실-1	30.24
	발전기실	15.90			분임토의실-2	32.40
	중앙감시실	25.44			강 당	282.35
	기계실	153.36			도구실	12.82
	유류탱크	21.06			준비실	12.82
	탁구장	157.47			화장실	32.40
	식당+ 주방	227.01			휴게실	40.26
	주방창고	15.48			홀+ 계간실+ 기타	141.45
	창 고	9.05				
	화장실	32.40				
	홀+ 계단+ 기타	125.75				
	소 계	**871.86**			**소 계**	**584.74**

세 부 시 설 명			면적(㎡)	세 부 시 설 명			면적(㎡)
1층	본관동	다목적취미교실-1	67.32	2층	숙소동	숙소11~18	388.80
		다목적취미교실-2	67.32			탈의+샤워실	51.48
		정보자료실	56.70			화장실	60.84
		사무실	79.38			창고	13.32
		지도자실	32.40			홀+계단실+기타	119.52
		상담실	30.24				
		화장실	32.40			**소 계**	**633.96**
		홀+계단실+기타	121.32	3층	본관동	전시실	137.52
		소 계	**487.08**			방송실	15.39
	숙소동	숙소1, 숙소10	47.20			홀+계단실+기타	33.84
		숙소2, 숙소9	56.56		숙소동	홀+계단실+기타 (연면적제외)	22.68
		숙소3~8	291.60			**소 계**	**209.43**
		탈의+샤워실	51.48	옥탑층 (연면적제외)	본관동	물탱크실	13.86
		화장실	60.84			홀+계단실+기타	22.68
		홀+계단실+기타	148.78			**소 계**	**36.54**
		소 계	**656.46**	**합 계**			**1,464.67**
합 계			**2,015.40**	**○ 건물동 합계**			**3,480.07**
○ 야외시설		소방탑(이륙장)	326.06	**□ 건물동+야외시설**			**4,004.25**
		소방탑(착륙장)					
		합 계	**326.06**	**□ 연면적:4,004.25-22.68-36.54**			**3,945.03**

□ 기계설비 목록

설 비 명		용 도	규 격	단 위	수량	비고
난 방 설 비	온 수 보일러	난방전용	200,000kcal	set	1	
		급탕전용	150,000kcal	“	1	
	심야 보이러	난방전용		set	5	
		온수전용		set	1	
난 방 기	온 풍 난방기	난 방 (탁구장)	17,000kcal	set	1	
		난 방 (식당)	38,000kcal	set	1	
		난 방 (강당)	55,000kcal	set	1	
	휀코일 유 닛	난 방	12,000kcal	기	7	
		난 방	8,000kcal	기	4	
탱 크	저수조	급 수	52,500리터 (3.0×7.0×2.5m)	기	1	
	저탕조	난 방	4,000리트	기	1	
	고 가 수 조	소 방	4,000리터	기	1	
	유류저장탱크	보일러 연료공급	4,190리터	기	1	
	옥외고가수조	화장실, 취사장용	10,000리터	기	1	
펌 프	급수펌프		2HP	대	3	
	온수순환 펌프		2HP	대	2	
	기계실배수 펌프		2HP	대	2	
	보일러순환 펌프		1/2HP	대	2	
	온수순환 펌프		1/2HP	대	2	
	급탕순환 펌프		1/2HP	대	2	
헷 다	온수순환 헷다	기계실	150×2500L	대	1	
	온수공급 헷다	“	150×2500L	대	1	
F A N	급·배기팬	“	#500	ea	2	
	급·배기팬	전기실	#450	ea	2	
	배기팬	B1 화장실	Ø250	ea	1	
	배기팬	유류탱크실	Ø300	ea	1	
	배기팬	발전기실	Ø350	ea	1	
	급·배기팬	식당	Ø400	ea	2	
	급·배기팬	탁구장	Ø400	ea	4	
	배기팬	화장실	Ø300	ea	12	
	배기팬	욕실	Ø73	ea	4	
	배기팬	야외화장실	Ø300	ea	6	
	급·배기팬	강당	Ø400	ea	4	
	배기팬	물탱크실	Ø300	ea	1	
암 반 관 정		급 수	심도100m	m3/일	95	

□ 위생설비 목록

세 부 시 설 명			수량	비고
지하 1층		화 장 실	□ 2개소 ◦양변기 6 ◦소변기 3 ◦세면기 6	
1층	본 관 동	화 장 실	□ 2개소 ◦양변기 6 ◦소변기 3 ◦세면기 6	
	숙 소 동	화 장 실	□ 6개소 ◦양변기 15 ◦소변기 5 ◦세면기 16	
		샤 워 실	□ 2개소 ◦샤워기 16	
2층	본 관 동	화 장 실	□ 2개소 ◦양변기 6 ◦소변기 3 ◦세면기 6	
	숙 소 동	화 장 실	□ 2개소 ◦양변기 11 ◦소변기 5 ◦세면기 12	
		샤 워 실	□ 2개소 ◦샤워기 16	
3층	본 관 동	야외화장실(Ⅰ)	□ 2개소 ◦양변기 2 ◦샤워기 2 ◦세면기 2	

□ 무대설비 목록

설 비 명	용 도	규 격	단 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프 랭 카 드		7,500L	면	1	1	1	
커 텐		10,200W×5,000H	set	1	1	1	
태 극 기		1,800W×1,200H	면	1	1	1	
영화스크린		6,000W×4,700H	면	1	1	1	
스포트라이트	무대조명	F.S 6" HL 1KW	set	9	9	9	
스포트라이트	무대조명	.V 8" HL 1KW	set	6	6	6	

□ 소방장비 목록

설 비 명	용 도	규 격	단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옥내소화전주펌프	소 방 급 수	7.5마력 400rm(다단터빈)	대	1	1	1	
옥내소화전충압펌프	소 방 급 수	3마력 30rm(웨스코형)	대	1	1	1	
옥내소화전함	소 화		대	9	9	9	
자동확산 소화기	소 방		set	4	4	5	
ABS분말 소화기	소 화	3.3kg	기	23	23	43	
ABC분말 소화기	소 화	20kg	기	1	1	1	
살 수 헤 드	소 화	하향식	EA	28	28	28	
방 화 문 샷 타	소 방		EA	3	3	3	

□ 전기설비 목록

설 비 명	용 도	규 격	단 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비상 발전기	비상발전	380/220V 50KW (반자동)	대	1	1	1	
회 전 위상변환기	단상전력 → 삼상변환	30마력	대	2	2	2	
		10마력	대	2	2	2	
		7.5마력	대	1	1	1	
수·배 전 반			면	25	25	25	
전 등	조 명		set	546	546	546	
가 로 등	조 명	나 트 륨	set	31	31	31	
진입로 가로등	조 명	나 트 륨	set	8	8	8	

□ 통신설비 목록

설 비 명	용 도	규 격	단 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공청안테나		U.HV.LV	set	1	1	1	
스 피 커	방 송	3W(천정형)	개	73	73	73	
		10W(벽부형)	개	5	5	5	

□ 정화조 설비 목록

설 비 명		용 도	규 격	단 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기계장비	루츠부로워		80A×5.5kw	조	2	2	2	
	소포펌프		50A×1.5kw	조	2	2	2	
	유량조정펌프		80A×0.75kw	조	2	2	2	
	배수펌프		80A×2.2kw	조	2	2	2	
	필터공급펌프		50A×1.5kw	조	2	2	2	
	슬 릿 지 이송펌프		50A×1.5kw	조	2	2	2	
	자동탈착창치		TO-50	조	3	3	3	
	자동탈착장치		TO-80	조	1	1	1	
	에어리프트 펌 프		65A×25A	조	1	1	1	
	염소약품펌프 &탱크		60cc/min×40w ×2col/cap	조	1	1	1	
	방진가대		5hp이하	조	3	3	3	
	V-NOTCII		500W×1200L ×600H	조	1	1	1	
	조목스크린		600W×600L ×10-20mm	조	2	2	2	
	자동스크린		10mm×0.4kw	식	1	1	1	
	감 속 기		0.265RPM ×0.4kw	식	1	1	1	
	모래여과기		Ø800×1530H	식	1	1	1	
	활성탄여과기		Ø800×1530H	식	1	1	1	
	급 기 휀		#2S×1.5kw	조	1	1	1	
	배 기 휀		#2S×3.75kw	조	1	1	1	
	BIO -REACTOR		HBR-50S, HBR-25W	식	1	1	1	
전기설비	MCC PANEL		옥내방수형	식	1	1	1	
	수위조절기		SQ-4	SET	2	2	2	
	전등시설		100W (내압방폭등)	개소	8	8	8	